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2,300,000	16,269,000
일반회계	476,800,000	14,304,000
특별회계	65,500,000	1,965,000
기타특별회계	65,500,000	1,965,00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25,000	27,75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61,000	10,83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5,198,000	155,9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000	600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8,887,000	866,6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13,000	3,390
치수사업특별회계	2,697,000	80,91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113,000	183,39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186,000	635,5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869,448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1,000,000천원, 내부유보금722,02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